

프로젝트명: 융자회계처리지침 개정

제안자: 선임연구원 진태호
선임연구원 이명인

1. 프로젝트 목적

국가는 민간과 달리 금리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사업 이외에도 민간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민 또는 중소기업 등 재정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의 재정융자사업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윤과 신용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책정하는 민간 시장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정책적 목적과 사회적 효익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융자사업의 금리가 국가가 조달하는 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가 조달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정책목적을 위하여 융자를 실행하는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 대신 부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국가 특유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 특유의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미국¹⁾, 캐나다²⁾ 등 발생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은 이러한 저리융자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와 「융자회계처리지침」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회계에서는 금리를 기준으로 조달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융자금”으로, 낮은 금리로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저리융자금”으로 정의하며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과 「융자회계처리지침」으로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1) SFFAS No.2: Accounting for Direct Loans and Loan Guarantees

2) CICA Handbook PS 3050: Loans Receivable

그러나 現 용자회계처리지침은 적용범위를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제정 취지³⁾와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변동금리조건에 따른 금리변경 시 일반용자금과 저리용자금 계정대체 등 실무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회계처리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채권관리 측면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회수불능위험과 저리용자사업의 정책보조효과만을 나타내는 금리보조에 따른 손실부담은 전혀 다른 정책정보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⁴⁾ 국가의 재정용자사업은 그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수혜자 기준으로는 시장금리보다 낮게 용자가 수행된 것이라면 국가가 수혜자의 채무불이행효과를 부담한 것으로 보조효과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정책적 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금리에 따라 평가방법 및 재무제표의 표시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상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국가회계제도개선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 및 논의를 수행하였으나, 일부개정으로는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연구 및 논의의 기한문제로 개선점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선 「용자회계처리지침」의 제정 취지를 국가가 수행하는 용자사업에 대하여 용자보조효과, 즉 용자사업의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고 표시하고자 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현행 지침의 문제점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용자회계처리지침」의 전부개정안을 산출하는 것으로 한다.

3) 조달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수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용자사업의 보조원가 산출

4)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2. 8)

2. 프로젝트 개요

(1) 융자회계처리지침의 구성 및 내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 제1항 및 3항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하며, 세부 회계처리지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예규로 「융자회계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인식, 상각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과 융자금의 조정, 매각 및 대손 발생 시의 회계처리, 관련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재무제표 공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융자회계처리지침」은 국가가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국가가 부담하는 금리 차이는 실제 정책적 목적으로 현금을 보조해준 것과 동일하므로 이러한 융자보조효과를 측정하여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융자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최초 인식

저리로 융자를 실행한 저리융자금의 가치는 장부의 가치와 실제의 가치가 같지 않다. 이는 국가가 정책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자보전과 신용위험에 대해서 원가가 발생하며, 이를 산출하기 위해 저리융자금의 ‘원금(장부가액)’과 ‘① 추정 회수가능액의 ② 현재가치(실제의 가치)’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한다.

- ① 추정 회수가능액은 저리융자금의 원리금,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예상액 및 기타 융자금 관련 직접비용을 고려하여 융자 종류별로 추정하며, 채무불이행 예상액을 추정할 때에는 과거 융자의 채무불이행 실적, 융자 회수에 영향을 주는 현

재 및 미래의 경제적 상황, 차입자의 재무상태, 용자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 및 그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 ②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이자율은 국채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해당 용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채이자율을 원칙으로 한 것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용자사업을 위해 재원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국가 전체 수준에서 국채 발행이 재원조달액만큼 감소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가 저리로 용자금을 1,000원 실행하고,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가 900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 100원에는 금리보조효과와 채무불이행 예상에 따른 위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인식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해당 저리용자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차) 저 리 용 자 금	1,000	대) 국 고 금	1,000
용 자 보 조 비 용	100	용 자 보 조 원 가 충 당 금	100

2) 상각

인식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직전 회계연도말 저리용자금 장부가액(900원)에서 저리 용자금 실행 시 적용한 유효이자율(국채이자율, 3%로 가정)을 곱해서 유효이자금액을 산정(27원=900원×3%) 하고, 저리용자금 원금(1,000원)에 표면이자율(실제 이자율, 1%로 가정)을 곱해 명목이자액(10원=1,000원×1%)을 산정한다. 유효이자금액(27원)과 명목이자액(10원)의 차액(17원=27원-10원)이 당기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상각액이며, 이를 명목이자액과 함께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차) 용 자 보 조 원 가 충 당 금	17	대) 저 리 용 자 금 이 자 수 익	27
국 고 금	10		

3) 평가

저리융자금의 조기상환, 채무불이행, 체납 및 회수 등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변경 시 변경액은 평가 시점에 변경된 순현금유입액을 재추정하여 융자 실행 시 사용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한 후 현재 저리융자금 원금과 비교하여 산출한다.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가 850원으로 산출되었다면, 현재 저리융자금 원금(1,000원)과의 차액이 융자보조원가충당금(150원=1,000원-850원)이며, 평가 전 융자보조원가충당금(83원=100원-17원)과의 차액(67원=150원-83원)을 추가로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차) 융 자 보 조 비 용	67	대) 융 자 보 조 원 가 충 당 금	67
----------------	----	----------------------	----

4) 제거

저리융자금의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이나 매각손실은 매각된 저리융자금의 장부가액에서 순매각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각이익이나 매각손실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서 더하거나 뺀다.

저리융자금이 당기말 900원에 매각된 경우 매각이익은 50원(900원-(1,000원-150원))이 발생하며, 이는 당기의 융자보조비용에서 차감한다.

차) 국 고 금	900	대) 저 리 융 자 금	1,000
융 자 보 조 원 가 충 당 금	150	융 자 보 조 비 용	50

5) 공시

2018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총 20개의 부처가 저리의 재정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이나 개

발기술사업화자금,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자금 대여, 농촌진흥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는 용자조건, 용자사업의 규모, 용자보조비용 등은 다음과 같다(출처: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① 용자 조건(일부)

부처	용자사업명	사업내용	용자대상	이자율(%)	용자기간
기획재정부	외화대출(단기) 외 40건	해외건설·플랜트수주 시설재 등 수입자금 등	외국환은행 등	0.0~7.3	1개월~10년 등
교육부	사립학교 환경 개선 자금용자 외 2건	사학시설자금 용자사업 등	사립유치원, 사립대학교 (원격 등) 등	0.0~3.0	10년 범위 내에서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율선택 등
통일부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유상) 외 4건	경제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공공사업자(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 대출 등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등	0.0~4.9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국방부	학자금대부사업 외 1건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대부 등	현역 및 군무원 등	0.0	2년 거치 4년 상환 등
인사혁신처	대여학자금	공무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대여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재직공무원	0.0	졸업 후 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 융자지원 외 4건	관광사업체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지원, 관광사업체 운영 자금지원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1.0~3.0	4(5)년 거치 5(7~8)년 분할상환 등
...

② 용자사업의 규모

(단위: 원)

구 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용자금	87,423,382,677,901	84,964,126,025,123
(용자보조원가충당금)	(7,620,820,078,196)	(7,638,305,015,816)
합 계	79,802,562,599,705	77,325,821,009,307

③ 용자보조비용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용자보조비용	1,173,898,049,312	1,015,112,116,733

(2) 주요 쟁점

과거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에서 검토된 과제들을 토대로 도출한 주요 쟁점사항은 「용자회계처리지침」의 적용범위, 용자보조효과의 구분, 용자보조효과의 후속 측정 등이다. 연구진은 쟁점사항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용자회계처리지침」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① 「용자회계처리지침」 적용범위

(1안) 현행 유효이자율을 조달이자율로 수정하여 지침 내, 지침 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용자 실행 당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향후 변동금리조건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계정대체 없이 하나의 지침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화

(2안) 용자금의 회수가능가액을 조달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를 용자금의 원금과 비교하여 회수가능가액이 원금보다 적을 경우 「용자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용자회계처리지침」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음. 1안과 같이 설정할 경우 저리 용자 여부는 금리보조효과로 판단하는 반면 보조효과의 산정 결과값은 신용보조효과까지 포함하여 산출되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

(3안) 국가의 용자사업은 정책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함. 단, 이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전체 용자금을 하나의 지침 내에서 규정하면서 ‘저리용자금’과 ‘일반용자금’의 구분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

② 용자보조효과의 구분

용자보조효과는 저리로 용자를 수행함에 따른 ‘금리보조효과’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보조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現 「용자회계처리지침」상 이 두 가지는 용자보조비용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조효과’의 경우 ‘일반용자금’과 ‘저리용자금’ 간의 개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용자금의 회계처리는 동일하여야 하나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용자금의 경우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설정하여 ‘용자금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반면, 저리용자금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산정 과정에서 회수가능액 추산 시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에 포함된다.

일반용자금과 저리용자금 모두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용자가 이루어진 것이고 차이점이 금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교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신용보조효과’와 ‘금리보조효과’의 구분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표 IV-1> 일반용자금 및 저리용자금 결산 현황(2018회계연도)

(단위: 억원, %)

구분	일반 용자금	저리용자금	합계
용자금	1,088,992	874,234	1,963,226
(용자보조원가충당금)	-	(76,208)	(76,208)
(용자금대손충당금)	(163,358)	-	(163,358)
(용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17)	-	(17)
합계	925,618	798,026	1,723,644
비율	53.70	46.30	100.00

출처: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반면, 현행대로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용자사업을 수행하면서 용자대상에게 실질적으로 보조비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본 지침의 취지임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용자보조효과는 금리보조효과와 신용보조효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간의 금리산정 프로세스는 이윤에 신용위험을 고려하는 것으로 금리와 신용은 연

계되는 개념이며, 조달금리와 액면금리와의 차이를 금리보조효과로 정의한다면 국가가 책정한 금리가 용자대상에게 무위험이자율이라는 의미가 되며, 이는 용자대상별로 동일할 수 없다.

용자사업의 수혜자 입장에서의 효익은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차이일 것이며, 금리 관련 효익과 신용 관련 효익은 개개인별로 상이하다. 국가 입장에서 조달금리는 (저리용자금의 경우)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사이에 존재할 것이고 조달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차이가 용자보조효과이며 이를 금리보조효과와 신용보조효과로 구분하는 것은 수혜자 관점에서 가능한 것으로 국가의 회계처리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용자보조효과의 후속측정

現 「용자회계처리지침」은 후속측정으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상각,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및 용자금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며,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용자금의 조기상환, 채무불이행, 체납 및 회수 등을 고려하여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하며, 원리금의 지급 유예, 채무의 면제, 이자율의 조정 및 만기연장 등에 따라 용자금의 조정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문단 12, 13)하는 규정은 채무불이행위험에 대한 요소(조기상환, 채무불이행, 체납 및 회수 등)의 변경에 대한 평가로 ‘신용보조효과’의 평가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함에도⁵⁾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매년 금리보조효과가 재계산되는 것으로, 또는 저리용자금과 일반용자금의 적용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용자금 조정의 경우 국가회계실체가 입법조치나 행정조치를 통해 현재의 용자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리금의 지급유예, 채무의 면제, 이자율의 조정, 만기연장 등이 해당되므로 이 경우 ‘신용보조효과’뿐 아니라 ‘금리보조효과’가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5) 이는 문단 13.(1).(나)에서 용자금 실행 시 사용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1안) 동일한 용자금의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조정 후 장부가액은 용자조건 변경을 반영한 저리용자금의 순현금흐름을 ‘최초 용자실행 시에 적용한 조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이는 저리용자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산출된 금리보조효과가 0보다 작을 경우 금리보조효과는 0으로 본다. 이 경우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용자 실행시점에 조달이자율보다 낮게 금리를 설정한 정책적 목적과 향후 다시 액면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실무상 저리용자회계처리지침의 적용 편의 등을 고려하였다.

(2안) 새로운 용자가 수행된 것으로 보아 조정 후 금리와 조정 시점의 조달이자율을 비교하여 일반용자금과 저리용자금으로 구분을 선행한 후 적용하는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용자금의 조정은 새로운 용자계약을 용자 상대방과 체결한 것으로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안) 이자율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만⁶⁾ (2안)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이외의 경우에는 (1안)과 같이 처리한다. 이는 금리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용자회계처리지침」의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지급유예나 채무의 면제, 만기연장 등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위험을 국가가 추가로 보조한 것으로 ‘금리보조효과’와는 무관하다. 또한 (1안)과 비교하여 이자율을 낮게 조정할 경우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보조효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3) 추가 개정 검토사항

① 유효이자율과 조달이자율

현행 「용자회계처리지침」상 ‘유효이자율’은 일반용자금과 저리용자금의 구분기준(문단 2)과 저리용자금의 보조효과 측정 시 할인율(문단 4)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조효과 측정 시 유효이자율은 ‘국채이자율(조달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규정(「용자회계처리지침」 문단 4, 문단 9)하고 있는 반면, 저리 용자사업 판단 시 유효이자율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지침 내 유효이자율을 정상이자율(문단 3, 19)과 조달이자율(문단 2, 4, 5, 9~11, 13, 15)로 혼용하고 있다.

6) 단순히 변동금리조건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단 3(정의)에서는 “유효이자율”이란 정상이자율로서 거래발생 당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를 저리 융자사업 판단 시 적용할 경우 융자 건별로 정상이자율을 파악하여 저리융자금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문단 9(유효이자율 적용)에 따르면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융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재원의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융자금을 집행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원가인 국채이자율(또는 조달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융자를 저리융자금으로 판단하게 된다.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실행한 경우 이에 따른 보조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이 예규의 제정취지를 고려하면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 문단 9(유효이자율 적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채이자율(또는 조달이자율)을 적용범위 판단 시의 유효이자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용어의 정의에 기술된 유효이자율 정의는 기존 지침 해석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수정할 경우 문단 9와의 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② 일반융자금 및 저리융자금 공시사항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적용받는 일반융자금과 「융자회계처리지침」을 적용받는 저리융자금의 공시수준이 서로 상이하야 국가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융자사업임에도 금리에 따라 주식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일반융자금은 92.6조원으로 전체 융자금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이자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융자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리융자금 수준으로 일반융자금에 대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사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융자회계처리지침 제정 취지(보조효과의 산출) 포함 여부

「융자회계처리지침」 문단 1에서는 본 지침의 목적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의 평가 등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의 문단제정근거 2에 따르면 본 지침의 제정 취지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실행할 경우 이에 따른 보조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보조효과의 산출이라는 제정 취지가 언급되지 않음에 따라 조달금리보다는 높지만 시장금리보다는 낮은 융자사업에 대한 누락 지적, 개별 융자대상의 신용에 따른 보조효과의 개별 산정 등 수혜자 관점의 의문이 자주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규의 목적에 제정 취지인 보조효과의 산출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이자율적용 순서(국채이자율, 조달이자율)

現 「융자회계처리지침」 문단 9에 따르면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최초 인식 시 적용하는 유효이자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이 있는 경우 조달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융자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준만큼 국채 발행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⁷⁾ 즉, 조달이자율이 국채이자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침은 국채이자율이 원칙이며, 직접적으로 조달된 이자율을 아는 경우에만 조달이자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문단제정근거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측은 조달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국채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⑤ 단기저리융자보조원가충당금인식 명문화

「융자회계처리지침」 문단제정근거 2에서 단기융자금에 대해서도 보조효과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산정한다고 서술하였으나, 본문에는 누락되어 있어, 융자보조원가충당금 최초 인식(문단 5) 등에 명문화가 필요하다.

7) 「융자회계처리지침」 문단제정근거 1

⑥ 실무해설, 문단제정근거 및 적용사례 보완

「융자회계처리지침」은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침으로 민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으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생소한 개념과 정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근거가 없다면 기준과 지침에 대한 완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무해설, 문단제정근거 및 적용사례 등을 검토 과정의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프로젝트 관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업무 추진 연혁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GAFSC)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⁸⁾의 후속작업으로 국가회계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논의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국가회계제도 개선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논의가 완료된 과제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융자회계처리지침」 관련 개선과제 역시 2015년 이후로 8차례의 검토가 있었으며, 융자금 유동성 대체 기준을 타 계정과목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기 위한 「융자회계처리지침」 개정 1건⁹⁾과 융자사업에 해당하는 융자금과 융자사업외 융자금의 계정과목 분리 신설을 통한 융자금 계정과목 체계 개편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개정 1건¹⁰⁾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유효이자율 정의, 저리융자금 용어, 융자사업 범위 및 적용대상 판단기준 등 본회의에 미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이슈는 본 프로젝트에 모두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2014년 기존 「회계준칙」과 「회계처리지침」을 통합하고 기존 지침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는 등 국가회계규정의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9) 「융자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단 21 중 “1년 내” 및 “1년 미만”을 각각 “1년 이내”로 하고, “1년 이후”를 “1년 후”로 한다.

10)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단 9. (2) 중 “대여 자금의 출처에 따라”를 “대여 자금의 출처 등에 따라”로 하고, “융자금”을 “일반대여금” 및 “융자금”으로 한다.

<표 IV-2> 과거('15~'18) 국가회계제도 개선TF 중 융자회계처리지침 관련 과제 처리결과

연도	개선 과제	소위	본회의
2015	1. 융자금의 유동성대체 기준 문구 타 지침과 통일	논의	의결
	2. 대여금 및 융자금 계정과목 체계 개편	논의	의결
	3. 융자 관련 금리보조효과와 채무불이행위험 부담효과 구분	논의	미상정
2017	1. 「융자회계처리지침」상 유효이자율 정의 수정	미상정	미상정
	2. 융자사업 범위 개편	논의	미상정
2018	1. 융자금을 '저리융자금'으로 용어수정	미상정	미상정
	2. 유효이자율 정의 삭제	미상정	미상정
	3. 적용대상 판단기준 '실행 당시' 조건 명확화	미상정	미상정

출처: 저자 작성